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선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등급 표시제 도입〉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6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영양등급 표시제 도입	2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0.
- (3) 회 부 일 : 2026.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양등급 표시제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지정받은 영양등급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u>이 조</u> 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표시) ① ----- ----- <u>이 조 및 제5조의2</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영양등급 지정 등) ① 식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영양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영양등급의 표시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 ----- -----제5조, 제5조의2-----
--	--

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자율심의기구(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⑧ (생략)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
터-----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정 명령) -----

1. ----- 제5조 제3항, 제5조
의2제4항-----

· 보관 ·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 4. (생략)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
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

1.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4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②·③ (생략)	-----. 1.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4항----- ----- ----- -----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영양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양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는 식품등¹⁾(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함)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아울러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법 제14조), 영업정지·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현행법 제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현행법 제31조).³⁾

1)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식품등”이라 약칭함.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4)의 식품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표시 대상 영양성분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5),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로 규정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영양성분의 명칭, 영양성분의 함량, 별표 56)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

< 영양표시 제도 개요 >

- **(제도 목적)**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자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4) [참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5)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함

6) [참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표시 대상)** 총 290개 품목 중 일부 식품유형(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260개 품목)에 대하여 영양표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 260개 전 품목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됨.**
 - * 영양표시 제외 품목: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식품(얼음, 추잉껌 등), ▲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은 식품(침출차, 천연향신료, 천일염 등), ▲ 표준화가 어려운 식품(한식메주, 한식된장 등) 등 30개 품목
- **(표시 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총 9가지***이며, 비타민A 등과 같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36개)**의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음
 - * ① 열량 ② 나트륨 ③ 탄수화물 ④ 당류 ⑤ 지방 ⑥ 트랜스지방 ⑦ 포화지방 ⑧ 콜레스테롤 ⑨ 단백질
- **(표시 방법)** 제품에 함유된 해당 영양성분의 ①명칭, ②함량, ③**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일정한 규격의 서식도안에 표시**하여야 함
 - 제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이 일정한 기준(1일 영양성분 기준치 등)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저”, “무”, “고”, “함유” 등의 용어와 함께 특정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위치의 제한은 없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영양표시 방법이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하여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등을 평가하여 영양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영양등급의 지정을 받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으나, 복잡한 수치 중심 표기 방식은 정보의 직관성과 가독성이 낮아, 소비자가 구매 현장에서 여러 제품을 신속하게 비교

·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영양 정보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식품 선택 및 불균형한 식습관을 형성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일부 발췌) >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기본형

1)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100g(ml)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100g당 000kcal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단위내용량당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00g×0조각) 1조각(00g)당 000kcal	
1조각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영양성분 평가에 따른 영양등급 지정 및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수치 중심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어린이 및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선택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 식생활의 질적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공식품⁸⁾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 선호식품 등 특정 식품등에 대하여 영양등급 표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 중복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포장지 교체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등 단계적 의무화 현황 >

시행시기 식품유형	'20.1.1.부터	'26.1.1.부터	'28.1.1. 부터
총 290개	121개 유형(42%) 시행 완료	182개 유형(63%) 시행 완료	
		'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 등을 한 78개 유형¹⁾ 시행 완료	'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 등을 한 78개 유형 시행 완료 예정

주: 1) 아이스크림믹스, 설탕, 당시럽류, 청국장 등 78개 유형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둘째**,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 등 일부 EU 국가에서 운영 중인 ‘영양등급 표시제(Nutri-Score)’는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제도임.

또한, 영양성분 함량을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단순화된 등급으로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⁹⁾

8) 290개 품목 중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식품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260개 품목

따라서, 국내 도입에 앞서 우리 식문화와의 적합성 및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뉴트리스코어(Nutir-Score) 개요>

국가	유럽 7개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개요	(전면 영양 표시제) 소비자가 가공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직관적으로 비교하여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자발적 표시 제도 (정의) A부터 E까지의 5단계 색상 척도를 통해 식품의 영양가 및 영양 성분 구성에 대한 정보 제공 (목표) 소비자가 특정 제품군 내에서 유사한 식품들의 영양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식품 선택시 도움을 주기 위함	
표시방법	5단계 색상 및 알파벳 척도 ※ A(진한 녹색)부터 E(진한 주황)까지 등급 부여 제품 포장 전면에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부착	
산정 기준	· 100g(ml)을 기준으로 점수 합산 · (최종 등급 결정) [감점 총점(N점) - 가점 총점(P점)]을 계산하여 나온 최종 점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A부터 E까지 부여 - 감점(N) : 열량,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낮을수록 좋음] - 가점(P) : 단백질, 식이섬유, 과일/채소/견과류/유지류(올리브유 등) 함량[높을수록 좋음] ※ A(녹색)으로 갈수록 건강한 식품을 나타냄	
적용대상	·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 모든 가공식품 대상(단, 단일 성분 식품*, 알코올 1.2% 초과 음료, 영유아용 조제식, 환자용 식품 등은 제외) * 가공되지 않은 육류, 생선, 신선 채소 및 과일	
기타	· (기준 개선) '24년부터 설탕·나트륨 기준은 더 엄격하게(하향),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과 통곡물은 더 우호적으로(상향) 조정 · (기업 준수사항) 브랜드 전수 적용 원칙으로 특정 브랜드 내 한 제품에 도입 시, 2년 이내에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표시해야 함(유리한 제품에만 표시 방지) · (소비자 활용) 상대적 비교 도구, 동일 식품군(예: 시리얼 vs 시리얼) 내 제품 비교에 최적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9) 유럽, 영양점수(Nutri-Score) 개정(비타민뉴스, 2025. 6. 2.), 식품등급 어떻게 매겨야...유럽은 논쟁 중(농민신문, 2023. 8. 21.)

□ **셋째**, 어린이 기호식품¹⁰⁾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¹¹⁾에 따라 ‘뉴트리스코어’와 유사하게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표시제”가 2011년 도입되었음.¹²⁾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주표시면에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

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사.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자.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2)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011.3.29. 개정 및 시행

으로 자율표시할 수 있음.¹³⁾¹⁴⁾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표시·광고 사항에 있어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됨¹⁵⁾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영양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 권고사항인 ‘신호등표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 간 유기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 검토

- 영업자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EU 국가에서조차 자율표시인 뉴트리스코어를 추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13) 2015년에는 6개사(31개 품목)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 3개사(11개 품목), 2021년 2개사(5개 품목)로 점점 참여업체 및 참여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이후로는 참여업체 및 참여 품목이 없는 실정임.

14) [참고 3]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개요

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영양표시도 전면에 표시 가능할 뿐 아니라, 표시조건을 충족할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서는 “저” 또는 “무” 표시 가능하며¹⁶⁾,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에 대해서는 “함유” 또는 “급원” 표시 및 “고” 또는 “풍부” 강조 표시도 가능함.
- 특히 개정안에 뉴트리스코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대상인 어린이 선호식품 등에 대해서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제가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식품산업협회

- 현행 영양강조 표시 제도의 활성화만으로도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상당 부분 달성이 가능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형태의 자율적 등급 표시 체계가 이미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영양등급 표시제는 식품 등급의 지나친 단순화로 특정 식품을 건강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올리브유, 치즈 등 영양학적으로 가치 있는 식품에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논란이 있는 제도임.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체로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함량이 0이

16) [참고 4]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거나 일반식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도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 표시를 제외하고 있으며, 트랜스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 또한 필수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영양등급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평가한 영양등급을 적용·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기능성 원료 및 제품의 품질과 무관하게 부여된 등급을 제품의 기능성 및 품질의 우수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라. 당류
- 마. 잼류
- 바. 두부류 또는 묵류
- 사. 식용유지류
- 아. 면류
-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차. 특수영양식품
-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 거. 농산가공식품류
-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더. 알가공품류
- 러. 유가공품류

- 머. 수산가공식품류
-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 서.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 어. 즉석식품류
- 저. 기타식품류
- 처. 건강기능식품
-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 2) 얼음류
- 3) 다류: 침출차
-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 6) 식초류: 희석초산
-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 8) 식염
-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 10) 주류
- 11) 포장육
-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참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E	11 mg α -TE	인	700 mg
당류	100 g	비타민K	70 μ g	나트륨	2,000 mg
식이섬유	25 g	비타민C	100 mg	칼륨	3,500 mg
단백질	55 g	비타민B1	1.2 mg	마그네슘	315 mg
지방	54 g	비타민B2	1.4 mg	철분	12 mg
리놀렌산	10 g	나이아신	15 mg NE	아연	8.5 mg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B6	1.5 mg	구리	0.8 mg
EPA와 DHA의 합	330 mg	엽산	400 μ g DFE	망간	3.0 mg
포화지방	15 g	비타민B12	2.4 μ g	요오드	150 μ g
콜레스테롤	300 mg	판토텐산	5 mg	셀레늄	55 μ g
비타민A	700 μ g RAE	바이오틴	30 μ g	몰리브덴	25 μ g
비타민D	10 μ g	칼슘	700 mg	크롬	30 μ g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참고 3]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개요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개요

- 당, 나트륨 등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입('11.3월~)

< 표시 성분 및 대상 식품 >

표시성분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	비고
포화지방, 지방, 당류, 나트륨	과자(한과류 제외),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 제외), 어육소시 지, 과·채주스, 아이스크림류	간식용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류 및 국수,	식사대용
당류	캔디류, 빙과류,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간식용

< 표시 기준 및 방법 >

- 제품에 함유된 4가지 영양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을 제품 주 표시면에 표기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함량)

등급	색상	포화지방	지방	당류	나트륨
낮음	녹색	1.5g 미만	3g 미만	3g 미만	120mg 미만
보통	황색	1.5~4g	3~9g	3~17g	120~300mg
높음	적색	4g 초과	9g 초과	17g 초과	300mg 초과

※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유탕면류 및 국수는 지방 12g초과, 나트륨 600mg 초과를 '높음' 기준으로 적용

-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 도안 중 한 개를 선택 표시

도안 1	 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도안 2		
도안 3		

【참고 4】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 관련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아. 3) 가)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ml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10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5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